

경력환산 기준표

직종	구분	경 력	환산비율
상담직	"갑" 경력	○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 상임직원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근무경력 ○ 관련분야 전문기관 상임직원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 4년제 대학 상담기관 전임교원 이상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 ○ 초등 및 중등학교 동일직종 전임교원	100%
	"을" 경력	○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근무경력 ○ 관련분야 전문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경력 ○ 4년제 대학 상담기관 시간선택제 근무 이상의 심리·정서 상담 관련 근무 경력	80%
	"병" 경력	○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인턴 경력 (단, 단순 사무보조의 경우 미인정) ○ 그 외 관련분야 근무경력 ○ 기타 이사장이 인정하는 관련분야 경력	50%

가.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은 아래와 같다
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
-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- 위프로젝트 사업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(교육부 훈령)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위클래스, 위센터, 위스쿨

나. 청소년상담복지 관련은 청소년과 그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·정서 상담, 보호 및 위기개입, 지역사회 연계망 운영, 교육 및 예방활동 등 상담복지 관련 업무로 한다.

다. 관련분야는 교육, 상담·심리, 사회사업(복지), 정신의학, 청소년, 아동 등으로 한다.

라. 관련분야 전문기관은 국가기관, 국제기구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, 공공단체, 개인이 설립한 법인기관, 민간기업체 등으로 한다.